|  |  |  |
| --- | --- | ---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발개환자[2014]19호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부성급 성 행정부 소재지 도시, 신강 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부문, 경신위(경위, 공신위, 공신청, 공신국), 계획단열 기업집단과 중앙관리기업, 유관 업종협회:·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국무원이 ‘12·5’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종합성 업무방안을 인쇄배포하는 데 관한 통지>(국발[2011]26호), <국무원이 ‘125’온실가스 배출업무방안을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국발[2011]41호), <국무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에 관한 의견>(국발[2013]30호)규정과 요구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진보시키고 널리 보급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단위가 선진적이고 적절한 에너지 저탄소 신형기술, 신형장비, 신형공예의 사용하게끔 인도하여 에너지 자원의 절약적이고 집약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자원환경의 압력을 완화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인쇄하여 배포하는 바, 이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2014년 1월 6일첨부**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제1장 총 칙**에너지 사용단위가 선진적이고 적절한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장비 사용을 인도하고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진보와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며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선발, 평정과 보급체제를 건립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12·5’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종합성 업무방안>, <’12·5’ 온실가스 배출통제 업무방안>과 <국무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신속한 발전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본 방법이 지칭하는 에너지절약기술이란 에너지의 절약적이고 집약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자원개발 사용효율과 효익을 제고하며 환경영향, 에너지자원낭비를 억제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에너지절약은 에너지자원 최적화개발기술, 단항 에너지절약 개조기술과 에너지절약기술의 시스템 통합, 에너지절약형의 생산공예, 고성능 에너지사용설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에너지소모를 감소시키는 신형자료개발 응용기술, 그리고 에너지절약, 에너지사용율을 제고하는 관리기술 등을 포함한다.본 방법에서의 저탄소기술이란 자원의 고효율적인 이용을 토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기본특징을 가진 기술이고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특징을 가진 기술이다.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목록>(이하 <목록>으로 지칭) 신청, 선발과 보급업무에 적용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신고, 선발과 보급의 조직업무를 책임지고 자발적인 신고, 과학적인 선발을 실행하며 기업위주, 정부인도, 사회참여, 중점보급과 동적 갱신의 원칙을 견지한다.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신고, 선발, 평정, 보급, 훈련 등에 대하여는 기술제공단위에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제2장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신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모아 인쇄 배포하여 통지하며 신고범위, 신고요구, 신고절차, 시효요구 등을 명확히 한다.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신강 생산건설병단발전개혁부문, 경신위(경위, 공신위, 공신청, 공신국), 계획 단열기업집단과 중앙관리기업, 국가 에너지절약중심, 유관 업종협회가 에너지절약 기술조직 신고단위; 각 성·자치구·직할시, 신강 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부문, 계획단열 기업집단과 중앙관리기업, 유관 업종협회가 저탄소기술조직 신고단위이다.조직신고단위가 통지요구에 근거하여 기업, 연구기구 등 기술제공단위를 조직하여 신고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자료의 진실성, 완전성과 규정 부합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조직신고단위가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을 합계, 정리하고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합계표(첨부1 참조)를 기입하며 고인을 찍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송부한다.기술제공단위가 국무원 유관부문을 통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자료를 제출한다.기술신고는 에너지절약 탄소감소효과가 분명하고, 기술이 선진적이며 경제에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실시사례 등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중점절약기술제공회사는 중점절약기술신청보고(첨부2 참조),중점절약기술신청표 (첨부3 참조)를 기입하여 조직신고단위에 제출하여야한다.중점 저탄소기술 신고단위가 중점 저탄소기술 신고표에 기입하여야 하며(첨부4 참조) 조직신고단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중점 에너지절약 기술신청보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기술개요;(2) 기술원리와 내용;(3) 평가지표는 에너지절약 능력, 경제효익, 기술선진성, 기술신뢰도 및 업종특성지표;(4) 배포건의;(5) 결론;(6) 첨부.　　　　**제3장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선발**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선발은 정량과 정성을 상호결합하고 통용지표와 특성지표를 상호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주요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절약 탄소절감능력: 형성될 수 있는 에너지절약량의 예측(건축, 교통 등 업종이 주요하게 참조하는 에너지절약 비율지표), 형성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감소 배출량의 예측(기타 온실가스 감소배출량은 첨보5에 근거하여 환산은 진행할 수 있다.)(2) 경제효익: 단위가 에너지절약량을 위한 투자액과 정태투자의 회수기, 단위가 이산화탄소 감소배출량을 위한 투자액과 정태투자 회수기. (3) 기술선진성;(4) 기술신뢰성;(5) 업종특성지표.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서기술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자료가 통지요구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증한다. 요구에 부합되면 전문가의 선발단계에 들어가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조직신고단위에 통지하여 보완하게 한다. 보완한 후에도 요구에 미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문가의 선발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기구에 위탁하여 선발을 진행한다.　　(1) 업종을 나누어 초심을 진행한다. 업종을 나누어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신청자료에 대해 초심을 진행하여 서면으로된 심사의견을 만든다. 심사 포인트는 기술이 창의성이 있고 에너지절약 탄소절감원리가 분명하며 지식재산권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는 등이다.(2) 재심사 논증. 전문가 논증회의를 소집하여 업종을 나누어 초심을 진행한 기술에 대해 재심사 논증을 진행하며 교차평점, 집체토론, 조장 재심사 등 환절로 나뉜다.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 기술논증의 중점은 에너지절약 탄소감소능력, 경제효익, 기술선진성, 기술신뢰성, 시스템영향분석, 업종특정지표 등이다.　　(3) 기술답변. 기술답변회의를 소집하고 재심사를 통하여 논증한 기술에 대해 조직기술제공단위에 답변을 진행하고 전문가의 질문을 받으며 세부적인 논증기술에 파고들어 진일보로 평가기술의 에너지절약 탄소감소능력, 경제효익, 선진성, 신뢰성 등에 대해 논증의견을 형성한다. (4) 의견청취. 답변과 현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논증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에 대하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부문, 업종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된 의견에 근거하여 수정하여 보완한다. 　(5) 공시. 청취한 의견상황에 근거하여 <목록>에 선정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제출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 사회에 공시하며, 공시기간 내에 서면의견을 받은 기술에 대해 전문가 논증을 다시 구성하고 공시와 논증상황에 근거하여 <목록>에 선정할 중점 에너지 저탄소기술을 확정한다. <목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고의 방식으로 전 사회에 발표하며, 주로 기술내용, 응용사례와 기술제공단위, 기술평정상황 등을 포함시켜 에너지 사용단위, 탄사배출단위와 개인이 조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목록>은 동적갱신을 실시하고 기술의 진보상황에 근거하여 기술지표와 기술제공단위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선진적인 동종 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대체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기구에 위탁하여 신고요구, 선발절차, 선발표준 등 내용에 따라 조직신고단위와 기술제공단위에 대한 훈련을 전개한다.　　　　**제4장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술제공단위가 새롭게 건설하거나, 신축 또는 개증축 건설하는데에 참여함으로써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장비 생산라인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에너지사용단위가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여 개조를 실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한다.기술제공단위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시범 보급중심을 고무 격려하고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전시하고 선전한다. 에너지사용단위를 업종으로 나누어 모아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고 교육시범기지를 건립하며 정기적으로 업종에서의 중점 에너지사용단위를 조직하여 기술교류와 훈련을 전개하여 고유방식 사용을 수집하여 보급한다. 각급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평가와 심사담당부문이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에너지사용단위가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무 격려하고 에너지절약 서비스 기업이 에너지관리 프로젝트의 계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에너지감사단위가 에너지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참조하고 감사보고에서 상응하게 개조조치에 대한 건의를 제출하는 것을 고무격려하고 각급 에너지감찰기구가 에너지절약 감찰에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참조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는 개조를 진행할 것을 건의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단위에 위탁하여 중점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최적의 실천사례를 편성하고 중점 에너지절약기술의 기본상황, 에너지절약 개조 전과 그 이후의 상황, 제3자기구의 검사보고, 사용자의 피드백 의견 등 에너지절약 효과가 돌출한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선전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단위에 위탁하여 중점 에너지절약기술의 현장 보급회의 및 기술매치메이킹모임을 조직, 개최하여 기술제공단위와 에너지사용단위, 에너지 절약 서비스기업과의 교류를 진행한다.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제공단위는 보급방안을 제정하여 매년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상반기 보급상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기구에 위탁하여 정리분석을 진행하며 보급효과에 대하여 추적, 평가함으로써 보급보고를 적기에 발표한다.**제5장 부 칙**본 방법은 발표한 날부터 실시한다.첨부1 :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종합표첨부2 : 중점 에너지절약 기술신청보고서첨부3 : 중점 에너지기술 신고표첨부4 : 중점 저탄소기술 신고표첨부5 :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량 추산방법 및 계수 선택 |  |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节能低碳技术推广管理暂行办法》的通知**发改环资[2014]19号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副省级省会城市、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部门、经信委（经委、工信委、工信厅、工信局），计划单列企业集团和中央管理企业，有关行业协会：根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国务院关于印发“十二五”节能减排综合性工作方案的通知》（国发[2011]26号）、《国务院关于印发“十二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的通知》（国发[2011]41号）、《国务院关于加快发展节能环保产业的意见》（国发[2013]30号）规定和要求，为加快节能低碳技术进步和推广普及，引导用能单位采用先进适用的节能低碳新技术、新装备、新工艺，促进能源资源节约集约利用，缓解资源环境压力，减少二氧化碳等温室气体排放，我们制定了《节能低碳技术推广管理暂行办法》，现印发你们，请按照执行。附件：节能低碳技术推广管理暂行办法国家发展改革委014年1月6日附件**节能低碳技术推广管理暂行办法****第一章 总 则**为引导用能单位采用先进适用的节能低碳技术装备，加快节能低碳技术进步和推广普及，建立节能低碳技术遴选、评定和推广机制，根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十二五”节能减排综合性工作方案》、《“十二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和《国务院关于加快发展节能环保产业的意见》，制订本办法。　　本办法所称节能技术，是指促进能源节约集约使用、提高能源资源开发利用效率和效益、减少对环境影响、遏制能源资源浪费的技术。节能技术主要包括能源资源优化开发技术，单项节能改造技术与节能技术的系统集成，节能型的生产工艺、高性能用能设备，可直接或间接减少能源消耗的新材料开发应用技术，以及节约能源、提高用能效率的管理技术等。　　本办法所称低碳技术，是指以资源的高效利用为基础，以减少或消除二氧化碳排放为基本特征的技术，广义上也包括以减少或消除其他温室气体排放为特征的技术。　　本办法适用于国家发展改革委管理的《国家重点节能低碳技术推广目录》（以下简称《目录》）申报、遴选和推广工作。　　国家发展改革委负责重点节能低碳技术申报、遴选和推广的组织工作，实行自愿申报、科学遴选，坚持企业为主、政府引导、社会参与、重点推广和动态更新的原则。　　重点节能低碳技术申报、遴选、评定、推广、培训等，不向技术提供单位收取任何费用。**第二章 重点节能低碳技术申报**　　国家发展改革委定期印发通知征集重点节能低碳技术，明确申报范围、申报要求、申报程序、时限要求等。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部门、经信委（经委、工信委、工信厅），计划单列企业集团和中央管理企业，国家节能中心，有关行业协会为节能技术组织申报单位；各省、自治区、直辖市、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部门，计划单列企业集团和中央管理企业，有关行业协会为低碳技术组织申报单位。　　组织申报单位应根据通知要求，组织企业、研究机构等技术提供单位准备申报材料，并对申报材料的真实性、完整性和合规性进行审核。节能低碳技术组织申报单位应汇总整理符合条件的技术，填写重点节能低碳技术汇总表（见附件1）并加盖公章，报送国家发展改革委。　　技术提供单位也可通过国务院有关部门向国家发展改革委提交申报材料。　　申报技术应符合节能降碳效果显著、技术先进、经济适用、有成功实施案例等条件。重点节能技术提供单位应编写重点节能技术申请报告（见附件2），以及重点节能技术申报表（见附件3），提交组织申报单位。　　重点低碳技术申报单位应填写重点低碳技术申报表（见附件4），提交组织申报单位。　　重点节能技术申请报告的主要内容包括：　　（一）技术概要； 　　（二）技术原理和内容；　　（三）评价指标，包括节能能力、经济效益、技术先进性、技术可靠性及行业特征指标；　　（四）推广建议；　　（五）结论；　　（六）附件。　　　　**第三章 重点节能低碳技术遴选**　　重点节能低碳技术遴选采用定量与定性相结合、通用指标和特征指标相结合的方式，重点节能低碳技术主要评价指标包括：　　（一）节能减碳能力：预计能形成的节能量（建筑、交通等行业主要参考节能率指标），预计能形成的二氧化碳减排量（其他温室气体减排量可根据附件5进行折算）；　　（二）经济效益：单位节能量投资额和静态投资回收期，单位二氧化碳减排量投资额和静态投资回收期；　　（三）技术先进性；　　（四）技术可靠性；　　（五）行业特征指标。　　国家发展改革委受理重点节能低碳技术申请材料后，对申报材料是否符合通知要求进行核对。符合要求的，进入专家遴选环节；不符合要求的，通知组织申报单位补充完善，补充完善后还不能达到要求的或未按要求进行补充的，不进入专家遴选环节。　　国家发展改革委委托有关机构进行遴选：　　（一）分行业初审。分行业对重点节能低碳技术申请材料进行初审，形成书面评审意见。审查重点是技术有创新性、节能减碳原理清晰、知识产权明确、符合国家产业政策等。　　（二）复审论证。召开专家论证会，对通过分行业初审的技术进行复审论证，分为交叉评分、集体讨论、组长复核等环节。重点节能低碳技术论证重点是节能减碳能力、经济效益、技术先进性、技术可靠性、系统影响分析、行业特征指标等。　　（三）技术答辩。召开技术答辩会，对通过复审论证的技术，组织技术提供单位进行答辩，接受专家问询，深入论证技术细节，进一步评价技术的节能减碳能力、经济效益、先进性、可靠性等，形成答辩意见。必要时根据答辩问询情况组织专家进行现场调研论证，并形成论证意见。　　（四）征求意见。对通过答辩和现场调研论证的重点节能低碳技术，由国家发展改革委向有关部门、行业协会等征求意见，并根据相关意见进行修改完善。　　（五）公示。根据征求意见情况，提出拟入选《目录》的重点节能低碳技术，由国家发展改革委向全社会公示，对公示期内收到书面意见的技术，再组织专家论证，根据公示和论证情况确定入选《目录》的重点节能低碳技术。　　《目录》由国家发展改革委以公告方式向全社会发布，主要包括技术内容、应用案例和技术提供单位、技术评定情况等，供用能单位、碳排放单位和个人查询使用。　　《目录》实施动态更新，根据技术进步情况，定期更新技术指标和技术提供单位，用先进的同类技术替换原有技术。　　国家发展改革委委托有关机构，就申报要求、遴选程序、遴选标准等内容，开展对组织申报单位和技术提供单位的培训。　　　　**第四章 重点节能低碳技术推广**　　国家发展改革委优先支持技术提供单位新建、参与新建或改扩建重点节能低碳技术装备生产线；优先支持用能单位使用重点节能低碳技术实施改造。　　鼓励技术提供单位建立重点节能低碳技术示范推广中心，展示宣传重点节能低碳技术；鼓励用能单位分行业集成应用重点节能低碳技术，建立教育示范基地，定期组织行业重点用能单位开展技术交流和培训，推广集成应用典型模式。　　各级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和审查负责部门在开展项目节能评估和审查时，鼓励用能单位采用重点节能低碳技术；鼓励节能服务公司在实施合同能源管理项目过程中采用重点节能低碳技术。　　鼓励能源审计单位在开展能源审计时，参照重点节能低碳技术能效水平，在审计报告中提出相应改造措施建议；鼓励各级节能监察机构在节能监察中参照重点节能低碳技术能效水平，对高耗能行业企业建议采用重点节能低碳技术进行改造。　　国家发展改革委委托有关单位编制重点节能技术最佳实践案例，包括重点节能技术基本情况、节能改造前后情况、第三方机构检测报告、用户意见反馈等，对节能效果突出的案例进行重点宣传。　　国家发展改革委委托有关单位组织召开重点节能低碳技术的现场推广会及技术对接会，开展技术提供单位与用能单位和节能服务公司交流。　　重点节能低碳技术提供单位要制定推广方案，每年向国家发展改革委提交上年度推广情况，由国家发展改革委委托有关机构进行整理分析，跟踪评估推广效果，适时发布推广报告。**第五章 附 则**　　本办法自发布之日起实施。附件1: 重点节能低碳技术汇总表附件2: 重点节能技术申请报告附件3: 重点节能技术申报表附件4: 重点低碳技术申报表附件5: 二氧化碳减排量估算方法及参数选择 |